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교부 등 6개 기관에 신설조직 성과평가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직을 정규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안 제1조 내지 제6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외교부·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조달청·농촌진흥청 등 6개 기관에 속한 10개 기구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직을 정규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4조(「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5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6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 및 제41조를 삭제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1>

[별표 5의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62조제1항 관련)

1. 외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가. 아시아태평양국 1개 과	1명
나. 동북·중앙아시아국	1명
다. 동북·중앙아시아국 1개 정책관등	0명
라. 아세안국 1개 과	6명
마. 국제안보국 1개 과	4명
바. 개발협력국 1개 과	5명
사. 기후환경과학외교국 1개 과	0명
아. 개발협력국 1개 정책관등	0명

2. 외교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가.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대한민국재외공관)	13명
나.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대한민국재외공관)	15명
다.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대한민국재외공관)	8명
라.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대한민국재외공관)	7명

<별지 2>

[별표 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6조제1항 관련)

1.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가.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	5명
나. 법무실 1개 정책관등	1명
다. 인권국 1개 과	9명
라. 국제법무국	1명
마. 국제법무국 2개 과	9명

2. 법무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서울지방법고정청 1개 과	0명
2)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1개 과	12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62명
2)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35명
3)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7명
4) 난민심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6명
5)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32명
6)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52명
7)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42명
8)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9명
9)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50명

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0) 항만 국경관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33명
11)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101명
12)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3명
13)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4명
14)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3명
15)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88명
16) 보호외국인의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1명
17)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2명
18)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법무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21명
19)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55명

<별지 3>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중소기업정책실 1개 과	6명
2) 창업벤처혁신실 1개 과	4명

<별지 4>

[별표 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0조의2제1항 관련)

1. 관세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통관국 1개 과	3명

2. 관세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인천공항세관 1개 과	12명
2) 평택세관 1개 과	8명
3) 인천공항세관 1개 과	10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7명
2)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0명
3)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30명
4)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8명
5)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0명
6)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5명
7)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1명
8)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3명

<별지 5>

[별표 4]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3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지방조달청 1개 센터	2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1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삭제> 제41조(평가대상 조직)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35